

예산총칙

2008년도 본예산

제 1 조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 · 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65,452,000	10,963,560
일반회계	325,000,000	9,750,000
일반회계	325,000,000	9,750,000
기타특별회계	30,152,000	904,56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300,000	309,000
수질개선특별회계	3,066,000	91,980
의료보호비특별회계	2,027,000	60,81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500,000	15,000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	1,470,000	44,100
주택사업특별회계	587,000	17,610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	470,000	14,100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2,470,000	74,100
치수사업특별회계	4,073,000	122,190
주차장운영특별회계	4,475,000	134,250
대지보상특별회계	413,000	12,390
기반시설관리특별회계	301,000	9,030
공기업특별회계	10,300,000	309,000
공기업특별회계	10,300,000	309,000

제 2 조 세입 ·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 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763,523 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 38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